

고 시

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3-10호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3월 7일

서울전파관리소장

1. 대 상 :

번호	별정통신사업 등록번호	상호
1	1-01-09-1076	와이비엠에프(주)
2	1-01-09-1113	(주)블루칩텔레콤
3	1-01-08-1048	(주)스토닉스테크놀러지
4	1-01-07-0943	(주)엠티고
5	1-01-10-1167	(주)인포플러스
6	1-01-09-1151	(주)플러스맵

2. 처 분 내 용 :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-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를 위반하여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조사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함

4. 근 거 법 령 :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92조

5. 처 분 일 자 : 2013. 3. 6.